

大田直轄市市內버스等の運送事業支援을 위한登錄稅課稅免除條例案

議案 番號	124
----------	-----

提出年月日 : 1992. 6. 3

提出者 : 大田直轄市長

1. 提案理由

一般庶民들이 주로 利用하는 大衆交通手段인 市內버스 및 市外버스의 運送事業者에 對하여 一部稅制支援하므로서 大衆交通料金の 引上要因을 抑制하여 一般庶民들의 生活安定을 圖謀하고자 地方稅 法 第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一定期間 課稅免除하고 져 하는 것임.

2. 主要骨子

가. 課稅免除 對象은 自動車 運輸事業法 第4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를 받은 者 가 同法施行令 第2條 第1號의 規定에 의한 市內버스 運送事業및 市外버스 運送事業에 直接 使用하기 위하여 登錄하는 市內버스 및 市外버스로 함 (案 第2條)

나. 課稅免除 稅目은 登錄稅로 함 (案 第2條)

다. 條例의 適用時限은 1994年 12月 31日까지로함. (案 附則 第2條)

3. 參考事項

가. 自動車運輸事業法

第 4 條 (免許등) ①自動車運送事業을 經營하고자 하는 者는 事業計劃을 提出 하고 交通部長官의 免許를 얻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自動車運送事業을 經營하고자 하는 者는 事業計劃을 提出하고 交通部令이 정하는바 에 依하여 交通部長官이 행하는 登錄을 받아야 한다 (改正 '86. 12. 31)

나. 自動車運輸事業法施行令

第 2 條 (自動車運送事業의 種類等) 法 第3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運送事業은 다음과 같이 細分한다.

1. 旅客自動車運送事業

가. 市内버스運送事業 : 주로 서울특별시, 直轄市, 市 또는 郡의 單一行政區域 안에서 運行系統을 定하고 交通部令이 定하는 自動車를 使用하여 旅客을 運送하는 事業

나. 市外버스運送事業 : 運行系統을 定하고 交通部令이 定하는 自動車를 使用하여 旅客을 運送하는 事業中 市内버스運送事業이 아닌 自動車 運送事業. 이경우 交通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一般, 直行 및 高速으로 그 運行 形態를 區分한다.

다. 地方稅法

(1) 第 7條 (公益等 事由로 인한 課稅免除 및 不均一課稅)

①地方自治團體는 公益上 其他의 事由로 인하여 課稅를 不適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課稅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 第 9條 (課稅免除等を 위한 條例) 第7條 및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課稅免除, 不均一課稅 또는 一部課稅를 하고자 할 때에는 內務部長官의 許可를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써 定하여야 한다.

라. 條例制定許可 : 1992. 4. 29. (內務部長官)

마. 立法豫告

(1) 期間 : '92. 5. 6 ~ '92. 5. 26. (20日間)

(2) 方法 : 市公報掲載 ('92. 5. 6. 第101號)

(3) 結果 : 意見없음.

대전직할시 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규정에 의거 등록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세면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 시내버스 운송사업 및 (나)목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 (저당을 포함한다)하는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2조의2 제2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3조 (사무처리의 위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에 관한 사무는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대전직할시 차량등록사업소장에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4조 (면제신청 등)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 또는 대전직할시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